

#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# 1. 제안이유

평창군 전입세대 지원사업 세부 지원기준 근거를 마련하여 전입세대에 실질적 혜택 제공과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인구 증가 및 지역 활력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인구정책 사업 지원내용 신설(안 제6조의2)

- 전입지원금, 평창시네마 관람권, 쓰레기봉투 지급

나. 전입세대 세부지원기준 명시(별표)

- 전입지원금(평창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),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(세대당 20매), 평창시네마 관람권(1인당 1매)
-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 1년이상 거주하다 전입한 자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2024년 예산에 3천만원 반영되었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3. 9. 22. ~ 2023. 10. 1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반영

##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다음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인구정책 사업 지원내용) ① 군수는 인구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·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전입지원금
2.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급
3. 전입자 평창시네마 영화관람권 지급

② 제1항 각 호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으며, 신청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## 세부지원기준

지원대상	지원분야	지원내용	지원자격	비고 (지원시기)
평창군 전입세대	전입지원금	1인 5만원 평창사랑상품권  ※지류, 카드(모바일) 중 택1	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 에 1년 이상 거 주하였으며, 평 창군으로 전입한 사람	전입신고시
	쓰레기봉투 (20L)	세대당 20매		
	평창시네마 영화관람권	1인 1매		

주1) 위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 
자 이어야 한다.

주2) 전입지원금은 해당 금액 상당의 「평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」에  
따른 ‘평창사랑상품권’ 으로 지급한다.

주3) 모든 지원은 대상자별 1회에 한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6조의2(인구정책 사업 지원내 용) ① 군수는 인구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·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전입지원금</u></li> <li><u>2.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급</u></li> <li><u>3. 전입자 평창시네마 영화관람 권 지급</u></li> </ol> <p><u>② 제1항 각 호의 지원기준은 별 표와 같으며, 신청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

**제15조(생활인구의 확대 지원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.

**제25조(문화기반의 확충)** 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(「도서관법」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

②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·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6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·관광·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순회 문화공연·전시 등을 통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직접 제공하거나 문화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문화·예술·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 비용추계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조례안명 :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6조의2
- 비용발생요인 : 전입세대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

## 2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5년간의 평창군 관외전입 분석 및 세부지원 검토를 비추어 비용 추계

### 나. 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계
총 소요액	247,800	247,800	247,800	247,800	247,800	1,239,000
상품권 구입	195,000	195,000	195,000	195,000	195,000	195,000
전입축하물품 구입	52,800	52,800	52,800	52,800	52,800	52,800

### ※ 산출기초(연간)

구분	지원내역	인원/세대	단가(원)	예산액(천원)
전입세대 지원	합 계			247,800
	평창사랑상품권 (1인당 5만원)	3,900명*	50,000원	195,000
	쓰레기봉투 (세대당 20L/20매)	1,700세대	10,000원	17,000
	평창시네마 영화관람권 (1인당 1매)	3,900명*	7,000원	27,300
	평창군 행정서비스 안내 책자 (세대당 1권)	1,700세대	5,000원	8,500

\* 2018~2022(강원연구원 전출입 통계조회시스템), 평창군 관외 전입 연평균 약 3,900명

### 다. 재원조달 방안

○ 전액 준비

### 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정책담당관 김두기
연락처	(033) 330 - 2850



